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8.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 3. 17. 이인선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5. 3. 18.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6.11.)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6.30.)

상정 · 축조심사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5.7.8.)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27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7.8.)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이인선 의원)

현재 학생들의 교내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지도는 학교의 장과 교

원에게 부여된 학생생활지도 권한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동안 학생의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인하여 해당 권한 범위에 대한 갈등이 지속되어 왔음.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에서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최근 휴대전화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목적의 휴대전화 소지 제한은 인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종전의 입장을 변경하여 판단한 바 있는데, 이를 법률에 반영하여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음.

이에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학습 활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소지에 관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윤상열)

최근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스마트기기) 사용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사용을 제지하는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수업과 관련 없는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내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하여 학교 내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학

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학생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내에서 휴대전화(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수업 등 교육 활동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학습권·교권 침해를 방지하면서 학생들이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내 갈등 발생을 예방하며,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보임.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조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및 서명옥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 이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1건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각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 반영 폐기